

관광외식서비스연구소 규정

(제정 2017. 3. 1.)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본 연구소는 전주대학교(이하 “본교” 라 한다) 부설 관광외식서비스연구소라 한다.

제2조(목적) 이 규정은 관광외식서비스 산업 부흥과 연구개발역량 강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설치한 관광외식서비스연구소(이하 “연구소” 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구분) 연구소는 본교 「부설연구소 설치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3항에 따라 특화연구소로 구분한다.

제4조(위치) 연구소는 본교 내에 둔다.

제5조(사업) 연구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논문, 특허 및 관광외식 상품 개발을 위한 지원
2. 공동 워크숍, 초청 강연
3. 관광 및 외식 산업 실용화를 통한 기업 및 공공기관 산학협력
4. 국가, 지자체 및 기업 산학협력 과제 수주

제2장 조직 및 기구

제6조(조직) 연구소의 조직은 다음과 같다.

1. 연구소장: 1인
2. 부소장: 1인
3. 간사: 1인
4. 감사: 2인 이내
5. 연구원
6. 연구인력: 약간 명
7. 연구소지원인력: 약간 명
8. 운영위원회: 3 ~ 5인 이내
9. 평가위원회: 5인 이상

제7조(연구소장) ① 연구소장은 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 <개정 2022.8.31.>

② 연구소장은 연구소를 대표하고 연구소의 연구 및 운영을 총괄한다.

③ 연구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8조(연구원) ① 연구원은 본교 전임교원으로 구성한다.

② 연구원으로 가입하기를 원하는 교원은 본교 「부설연구소 설치 등에 관한 규정」의 [별지 1]의 가입신청서를 연구소에 제출해야 하며, 소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가입을 승인한다.

③ 연구원은 연구소에서 진행하는 연구 및 사업을 수행한다.

제9조(간사) ① 간사는 필요한 경우 연구원 중에서 연구소장이 임명한다.

② 간사는 연구소의 사무와 운영위원회의 회의록 작성을 담당한다.

③ 간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10조(연구인력) ① 연구인력은 연구원과 협력하여 연구소의 연구활동 및 용역사업에 기여하는 사람을 말한다.

② 연구인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구교수
2. 박사후연구원
3. 특별연구원
4. 연구조원
5. 연구보조원

제11조(연구소지원인력) ① 연구소는 연구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직원 및 조교 등의 연구소지원인력을 둘 수 있다.

② 연구소지원인력은 절차에 따라 총장이 임용한다.

제12조(연구분과) ① 연구소는 다음과 같은 분과를 두며, 각 분과에는 분과장을 둔다.

1. 관광 분과
2. 외식 분과
3. 서비스 분과
4. 스포츠·태권도 콘텐츠산업 아카데미 분과 <신설 2020.4.14.>
5. 관광숙박 아카데미 분과 <신설 2020.4.14.>

② 분과장은 조교수 이상의 연구원 중에서 소장이 위촉한다.

③ 분과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3장 운영위원회

제13조(설치 및 구성) ① 연구소는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장은 연구소장이 된다.

③ 위원은 소속 연구원 중에서 연구소장이 위촉하며, 연구분과장은 당연직으로 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14조(심의사항)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연구소 운영의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2. 연구원 가입 및 연구인력 임용에 관한 사항
3. 연구소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4. 부서의 설치 및 폐지에 관한 사항
5. 연구소 규정의 개정에 관한 사항
6. 감사 선출에 관한 사항

7. 교원 연구업적 평가에 관한 사항
8. 그 밖의 연구소 운영에 관한 사항

제15조(소집) ① 회의는 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장이 소집할 수 있다.

-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이상의 참석으로 개의하고, 참석위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③ 운영위원회의 회의록은 반드시 작성하고 참석위원 2인 이상 서명·날인하여 보관한다.

제4장 평가위원회

제16조(설치 및 구성) ① 연구소는 자체평가 및 자문을 위하여 평가위원회를 둔다.

- ② 위원장은 연구소장이 된다.
- ③ 위원은 내·외부 전문가 중에서 연구소장이 위촉한다.
- ④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17조(평가사항) 평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한다.

1. 연구소 수행 과제에 대한 평가
2. 연구인력의 연구수행능력에 대한 평가
3. 그 밖에 연구소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8조(소집) 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다.

-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참석으로 개의하고, 참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③ 평가위원회의 회의록은 반드시 작성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에 이를 보고해야 한다.

제5장 재정 및 감사

제19조(재정) ① 연구소의 재정은 연구간접비로 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연구소 사업 등에 의한 수입금 및 기타 보조금으로 충당할 수 있다.

- ② 연구소의 회계연도는 본교의 회계연도와 같다.

제20조(예산 및 결산) ① 연구소 예산 편성 및 결산은 본교의 회계연도에 따르며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② 연구소의 예산 편성과 결산 및 집행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소장이 행하고, 감사의 감사를 받는다.

제21조(감사) ① 연구소는 자체적으로 감사활동을 통해 공정하고 합리적인 연구소 행정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 ② 감사는 매년 회계연도 종료 직후 1개월 내에 연구소 사업 및 회계에 대한 정기감사를 실시해야 한다.
- ③ 감사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장이 임명한다.
- ④ 감사결과는 문건으로 작성하여 연구소 간행물 등에 공표하고 산학협력단에 통보해야 한다.

제22조(기타) 위 규정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본교 「부설연구소 설치 등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

다.

부 칙

이 규정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0년 4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2.8.31.>

이 규정은 개정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